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결서에 소수의견 명시 등〉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64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국민권익위원회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4
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추가	7
3.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가능 조항 신설	13
4. 의결서 작성 의무화 및 소수의견 명시	18
5. 신고사항에 대한 직접 조사 근거 마련	23
6.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기간 제한	30
7. 권익위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	35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2. 제출일 : 2024. 9. 30.
3. 회부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부패방지과 고충민원의 처리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결서 작성 시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권을 도입하고 신고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함(안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그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제3항 등).
- 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9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국민권익위원회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함)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 ----- ----- ----- ----- ~~대통령~~ ----- ----- -----. ② (현행과 같음)

□ 권익위는 부패방지과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3월 출범함.¹⁾

1)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를 통합된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는 2008년 2월 통합 이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였으나, 권익위 출범 시에는 2008.2.29 정부 조직개편 당시 대통령 소속기관 감축방침, 국무총리의 행정 각 부에 대한 조정권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한 바 있음.

□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권익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권익위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일응 긍정적임.

○ 권익위의 업무 중 고충처리와 부패방지 업무는 타 국가기관의 업무에 대한 외부통제적 성격을 지니는데, 법률상 강제력이 없는 권고의 특성상 다른 기관의 협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²⁾

□ 현재 대통령 소속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특별감찰관 등이 있음.

□ 행정기관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구분의 명확한 기준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정부는 국무총리의 행정 각 부에 대한 조정권 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대통령 소속기관을 감축해오고 있음.

2) 부패방지 업무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이며, 권익위는 국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신고사건 접수·처리 및 제도개선 권고 또한 수행하고 있음.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2012년 정부조직개편 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임.
- 현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이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국무총리 소속임.
- 정리하면, 개정안의 논의 시 대통령 소속기관 감축 기초,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추가

□ 개정안은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³⁾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u>자</u>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u>사람은</u> -----. 1. ----- <u>사람</u> 2. ----- ----- <u>사람</u>

- 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민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⁵⁾, ③ 정당의 당원, 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로 현재의 당적 보유 및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기간(3년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이었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 등도 위원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하여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직무수행에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과 같이 이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침해 가능성 및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결격사유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침해 가능성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대통령선거에서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결격사유의 추가로 달성하려는 위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고려하더라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6)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⁷⁾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⁸⁾

□ 둘째,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위원 결격사유와 개정안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정 간에 형평성, 균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하게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⁹⁾의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항을 살펴보면 법률에 따라 다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7)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2021헌마460. 재판관 7인은 전부위헌, 재판관 2인은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판사에 관한 부분만 일부 위헌

- (주요 결정 내용)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추론 내지 추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탈당 등으로 법관 임용 시점에 당원 신분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었다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논리필연적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9) 「정부조직법」 상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총 6개임.(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체적으로 정당의 당원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삼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위원 결격사유 현황>

위원회명	위원 결격사유		근거 법률
	정당 당원 관련	선거 후보자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O (정당의 당원)	X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정거래위원회	O (정당 가입 금지)	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금융위원회	O (정당 가입 금지)	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O (정당의 당원)	O(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당의 당원)	X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원자력안전위원회	O (정당의 당원)	X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와 함께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 여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와의 형평성·균형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담임권 제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3.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가능 조항 신설

□ 개정안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u>

□ 현행법령은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¹⁰⁾ 권익위는 의결 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 선례는 없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대표적 회의체 기관인 국회는 「국회법」에서 무기명투표를 규정하고 있고,¹¹⁾ 「지방자치법」¹²⁾도 무기명투표를 규정하고 있음.

○ 무기명투표는 중대하거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되는 사안 의결 시
의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11)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85조의2(안전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체제·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전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체제·자구의 심사)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2조(표결방법)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12)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권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이 경우 비상임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함.¹³⁾

□ 개정안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 관련된 의결 사항 등 기명투표가 위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자유로운 의견표시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일응 긍정적임.

-
-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책임성 담보 및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무기명 비밀투표를 도입할 경우 자칫 표결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권익위의 설치 목적을 감안할 때,¹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추어 위원 각자의 찬반여부를 한점 의문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하게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¹⁵⁾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도 참고할 수 있겠음.

□ 셋째, 개정안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1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5) 「정부조직법」 상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총 6개임.(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유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고, 절차의 개시도 위원장에게 일임되어 있음.

「국회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하여 무기명 투표의 개시가 의장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음.¹⁶⁾

따라서,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경우가 개별위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국회법」과 같이 일정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도입할 경우 표결에 대한 권익위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6)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4. 의결서 작성 의무화 및 소수의견 명시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그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소수의견의 요지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u> <u>⑤ (현행 제3항과 같음)</u>

□ 현행법은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의무나 소수의견 기재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¹⁷⁾

○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모든 의결사항의 경우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음.¹⁸⁾

□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의결서에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임.

□ 먼저 의결서 작성 의무화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재도 내부 규정에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서 작성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바, 개정안은 현행 내부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의결서에 소수의견 기재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하고 있으며,¹⁹⁾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에 소수의견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18)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1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① 전원위원회에 의결 의안을 상정한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서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

19) 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수의견 기재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은 부존재함

2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속기록을 비공개하고, 합의 회의록에 의원들 간 구체적인 의견 교환내용은 생략한 채 합의의 결과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이후에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별 발언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하고 있음.²¹⁾

○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소수의견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음.

□ 소수의견을 기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안전보장회의, 감사원, 국회 등은 소수의견 기재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²²⁾

-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합의 기능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① 위원명, ② 개인 사생활 또는 사업자 영업비밀 관련 사항, ③ 기타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은 제외하고 작성

22) 「법원조직법」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8조(선고의 방식)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선고 시 이를 공개하고 그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소수의견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소수의견 공개의 논거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취 한점 의문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소수의견이 어떤 내용 이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이 법과 원칙에도 부합하며, 소수의견을 비공개할 경우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거나 결정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음을 들 수 있음.

○ 소수의견을 비공개의 논거는 중요한 사안의 소수의견 공개 시 국론분열 및 사회혼란 가능성이 있고, 소수의견 개진자에 대한 혹독한 비판여론 또는 테러나 협박 위협 등으로 소수의견 개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소수의견의 의무적 기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수의견의 소극적 개진 등의 불이익과 소수의견의 공개를 통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분(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9. 의결 내용(소수의견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요지를 적어야 한다.

알 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고,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서 작성의무에 관하여는 법률로 단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이유로, 소수의견 요지 명시 의무화는 행정기관은 의결서를 통해 외부에 통일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소수의견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신고사항에 대한 직접 조사 근거 마련

☐ 개정안은 권익위가 접수된 부패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직접 조사 등을 방해·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생략)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③ ----- ----- -----직접 조사하거나 이를----- -----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접

⑥ (생략)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⑨ (생략)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

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에-----

-----.

-----.

⑨ -----

-----.

-----한 차례만 연장할-----.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7항-----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현행과 같음)

2. ----- 제59조 제7항 -----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7항

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1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생략) ④ (생략)	----- ----- ----- ----- ----- ----- -----. 제9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제42조(제59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의 경위·취지 등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²³⁾

- 권익위가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전제 사건 중 27.2%가 무혐의 처리되었고,²⁴⁾ 피신고자가
조사기관에 소속된 사건 등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자신과 관련된

23)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
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
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
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
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
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
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24) 권익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기관에 이첩하여 회신받은 부패신고사건 2,897건 중
2,110건(72.8%)이 혐의 적발되었고, 787건(27.2%)이 무혐의 처리되었음.

부패사건을 스스로 조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 개정안은 해당 조사기관뿐만 아니라 권익위도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직접 조사 방법 및 직접조사 등을 방해·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고충민원조사²⁵⁾를 준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반부패기관에 부패행위에 대한 별도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해외사례²⁶⁾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권익위가 직접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부패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권익위의

25) 현행 제91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42조에 따른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6) 영국, 미국, EU, 스페인 등 (참고자료 1 참조)

설치 목적 및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권익위의 당초 설치 목적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징계 등 최종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첩 또는 고발하는 등 부패방지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 다른 조사기관에 비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위한 인력 및 관련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권익위가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사 또는 이첩 여부가 온전히 권익위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권익위가 임의로 조사 또는 이첩 여부를 취사선택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단이 부재함. 개정안의 논의 시에는 권익위의 조사 대상 선택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건 접수시 관계기관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근거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6.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기간 제한

- 개정안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생략)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u>연장</u> 할 수 있다.	⑨ ----- ----- ----- ----- ----- ----- -----한 차례만 연장 할-----.

- 현행법상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음.²⁷⁾ 권익위는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며, 해당 조사기관은 해당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함. 다만, 신고의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²⁸⁾

- 이와 같이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장 가능 횟수나 연장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⑨ (생략)

- 최근 5년간 부패행위 신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77.5일로, 90일 초과 처리건수는 전체의 27.1%를 차지하고 있음.

<부패신고 현황(공공재정 부정청구 포함)>

(단위: 건, 일, %)

연 도	총 건수	처리기간별 건수						평균 처리 기간
		60일 이내		61일 ~ 90일		90일초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1,830	711	38.9	395	21.6	724	39.6	92.9
2021	1,979	899	45.4	422	21.3	658	33.2	88.5
2022	933	575	61.6	119	12.8	239	25.6	73.5
2023	976	702	71.9	187	19.2	87	8.9	51.5
2024	943	626	66.4	220	23.3	97	10.3	55.6
합계	6,661	3,513	52.7	1,343	20.2	1,805	27.1	77.5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부패행위 신고처리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자의 권익 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일응 긍정적으로 보임.

○ 현행법과 같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 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할 유인이 부족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부패행위 신고처리기간을 최대 90일로 한정할 경우 부패행위 신고처리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신고 사건별 범위·규모·난이도 등이 상이한 점 및 직접 조사권 부여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60일+30일) 내에는 반드시 신고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재 처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비율이 27.1%로 적지 않다는 점, 부패행위 신고사건 자체의 속성 및 권익위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신고사항별로 신고사항의 범위·규모·난이도가 상이하고, 신고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의 구체성·정확성·충실성도 건별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사항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권익위가 처리기간 준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경우, 내실 있는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안 제59조에서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직접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처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입법취지 및 위의 고려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최대 90일로 제한할 경우, 신고내용이 방대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권익위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

- 개정안은 권익위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9호 삭제).²⁹⁾

현행	개정안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8. (생략)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 21. (생략)	제12조(기능) ----- -----. 1. ~ 18. (현행과 같음) <u><삭제></u> 20. · 21.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³⁰⁾과 시·도지사 또는 시·도 의회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음.³¹⁾

29) 신장식의원은 동 개정안과 함께,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2호)을 제출하였는바, 두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30)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외

31)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그 밖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는 등 일반행정심판 제도를 총괄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³²⁾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요>

(2025. 2. 5. 기준)

구분	내용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임)(차관급)
구성	위원 70명 이내(상임위원 4명 이내) ※ (현황) 상임위원(대통령 임명): 3인 / 비상임위원(국무총리 위촉) : 61인
심리관할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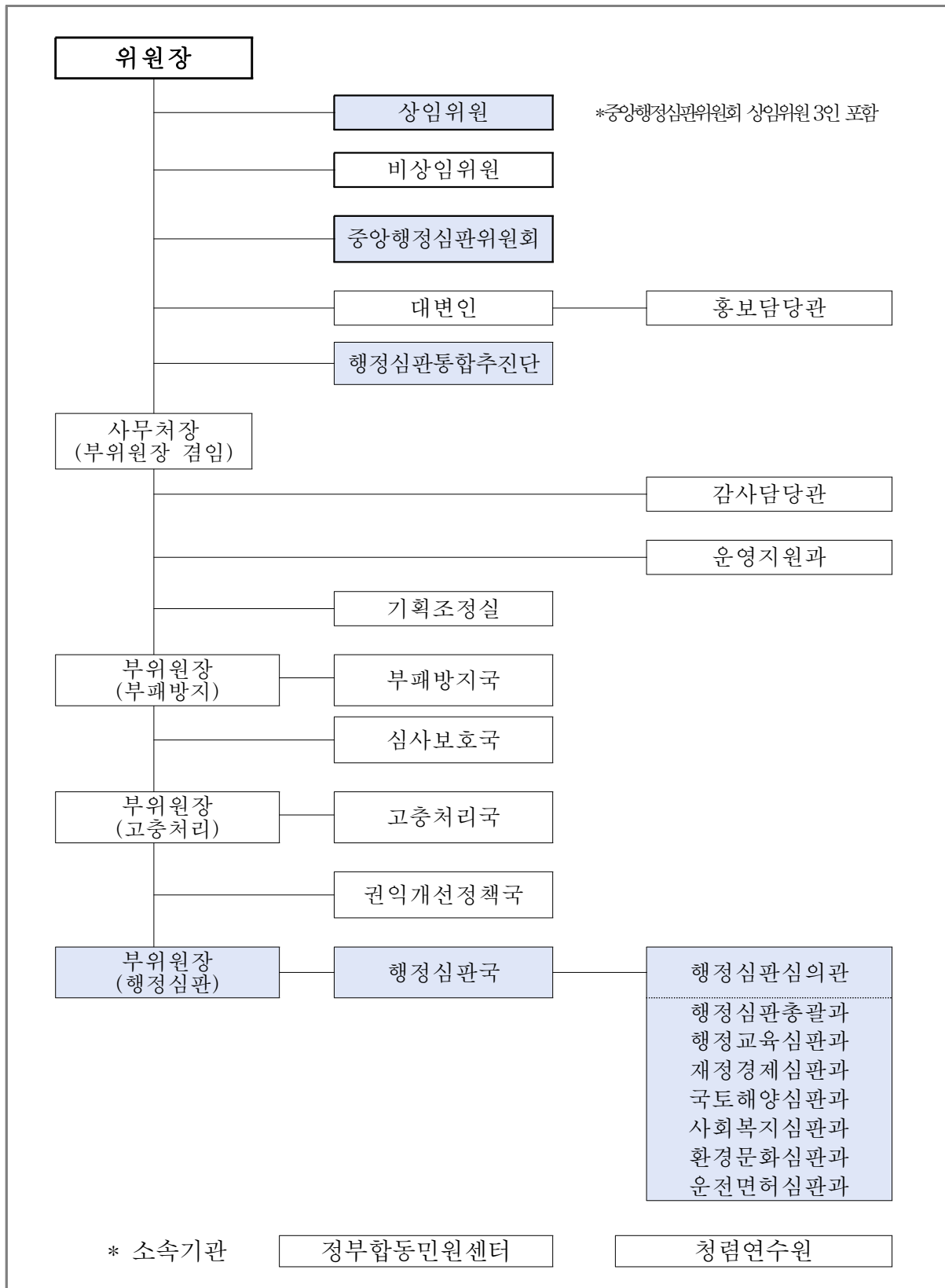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32) 「행정심판법」 제60조(조사·지도 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 실태
 2. 재결 이행 상황
 3.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 ②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음영: 행정심판 업무 관련 조직)



□ 한편, 동 법 제정 당시(1984년)에는 일반행정심판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舊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³³⁾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의 권익구제와 권리보호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면서,³⁴⁾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수행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등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된 것임.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부패방지와 고충민원의 처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³⁵⁾

[표 3] 「행정심판법」 제정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혁

일시	소속	위원장	비고
1985. 10. 1.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설치
20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권익위 부위원장	소속 변경
2010. 7. 26.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권익위 부위원장	명칭 변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3) 제정 당시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 법률로 상향 규정(법률 제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되었음.

3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고자 하였던 것임.

35) 같은 취지로, 제21대국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로 재편하면서,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에서 제출(2020. 6. 25.)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삭제하려는 것임.
-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2호)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겸임하도록 규정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제처로 이관함을 규정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 제도의 본질과 목적, 각 기관의 기능과 행정심판 업무와의 연관성 등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기관에서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어느 기관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심판기관은 독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측면³⁶⁾과 행정심판 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³⁷⁾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6)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법절차”를 특정지우는 요소 중 하나로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을 들고 있음(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결정 참조)

- 행정심판은 사실인정과 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처분 등의 적법·타당 여부를 판단(재결)하게 되는데,
- 정부 내 법령의 입안과 최종적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법령의 입안 과정에서의 연혁·취지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정부 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부 내 법령 입안·해석 기관이 다시 행정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오류의 자기 시정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 행정심판은 처분 등의 위법을 넘어 부당까지 심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준사법절차임에도 기존 법령의 입안·해석에 종속되어 행정심판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³⁸⁾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³⁹⁾

37)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38)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 안동규, 2018, p.2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7.), 정부위원회.

39) 이에 대하여는, 법제처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에도 舊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던 행정심판 사건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인용률도 현재보다 낮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행정심판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이 있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기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율*
			계	인용	기각	각하	
국무총리 소속 (법 제처 운영)	1985~1990 (6년)	2,181	2,019	590	1,207	222	32.8
	1991~1996 (6년)	6,915	6,203	1,923	3,296	984	36.8
	1997~2002 (6년)	56,657	54,396	14,234	37,096	3,066	27.7
	2003~2007 (5년)	98,129	95,333	15,663	76,108	3,562	17.1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2008~2013 (6년)	163,730	159,390	25,664	127,396	6,330	16.8
	2014~2019 (6년)	151,493	148,759	20,930	109,305	18,524	16.1
	2020~2024 (5년)	114,176	110,003	6,962	78,301	24,740	8.2

* 인용율=인용/(인용+기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⁴⁰⁾

□ 둘째, 조직개편이 단순히 물리적 변동 또는 기계적인 통합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효율성 및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업무의 이관은 행정심판 기능과 현재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창구를 통합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업무, 고충처리 업무, 행정심판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하게

40)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사건의 심리 엄격화 경향으로, 전체 인용률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입장임

되었는데,

- 이에 대하여, 부패방지(반부패·청렴) 업무와 행정심판 업무는 상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⁴¹⁾ 고충처리 업무와 행정심판 업무와의 연관성에 관하여는, 행정기관에 의한 권익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서로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⁴²⁾과 두 제도는 법률상 효력, 업무처리 절차 등에서 이질적이므로 연계에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⁴³⁾이 대립하고 있음.
- 한편, 법제처의 주된 기능은 법령안에 대한 입안·심사와 법령해석으로, 다년간 법령해석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및 구체적 사건에서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근거 조항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법제 업무부서로부터 즉시 관련 자료를 지원받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음.⁴⁴⁾
- 다만, 법제처의 법제 업무 등과 행정심판 업무를 통합하게 된다면 법령을 입안하는 기능과 적용·판단하는 기능을 같은 기관에 두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두 기능을 같은 기관에 둘 경우,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사안을 참고하여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동종의 사안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동 법 제59조⁴⁵⁾가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⁴⁶⁾가 있음.

41)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10월~12월 운영) 분석 결과

42)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 안동규, 2018, p.28-30.

43)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최철호, 2018. 부패방지법연구 제1권 제1호 p.58

44)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최철호, 2018. 부패방지법연구 제1권 제1호 p.59-62

45) 「행정심판법」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된 이후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시정조치 요청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제도개선을 총괄하는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⁴⁷⁾ 법제 업무 및 해석은 행정심판 업무와 다소 이질적이라는 의견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 건수>

(단위: 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연도	시정조치 요청 건수	연도	시정조치 요청 건수	제도개선 제출 건수*
1998 ~2007	70	2008 ~2024	23	129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총괄하는 부서로 제출된 건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행정심판기관을 어느 기관에 두는지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라는 점, 행정심판이 국민의 신속한 권익구제와 함께 자율적 통제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각 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행정심판 업무와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6) 법률신문, “행정심판, 법제처로 이관설에 우려 목소리 높다”(2017.12.20.) 참조.

(<https://www.lawtimes.co.kr/news/136389>)

47) ‘행정심판 30년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p.103.

연관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기관을 일원화하려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 밖에, 법제처의 주된 업무는 법령의 입안·심사 및 해석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 업무가 법제처로 이관될 경우 행정심판 관련 조직 및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1

해외 반부패기구 주요기능 및 조사권 보유 현황

□ 영국, 미국

구 분	영 국	미 국
기 관 명	중대비리 조사청(SFO)	특별심사청(OSC)
주요 기능	· 중대하고 복잡한 부정행위의 조사 및 기소	· 내부고발 공무원의 보상·보호 · 내부고발 접수, 수사, 기소 ·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군복무자 공직 재취업 관련 사항
조사권 보유여부	조사권 및 기소권 보유	조사권 및 기소권 보유

□ 유럽

구 분	E U	프 랑 스	스 페 인	이탈리아	폴 란 드
기관명	부패방지총국(OLAF)	반부패청(AFA)	부패사건 전담 특별검찰청(FEPC)	반부패청(NACA)	중앙반부패청(CBA)
주요 기능	· EU예산 사용과 관련된 조직 내외 부정·비리 조사 감시 · EU내 부패 예방 정책 수립	· 부패예방 관련 공공 및 민간부분 지원 ·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 확인	· 뇌물, 배임, 공금횡령, 직권남용 · 공공재산, 밀수, 외환관리 관련 범죄 · 차관급 이상 공직자 사건	·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 감시 ·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 지침 제정 · 공공계약 관리·감독	· 공공·민간 부패 범죄 수사 · 부패방지 관련 정보 수집
조사권 보유 여부	조사권 보유	조사권 보유 (단, 뇌물사건이 아닌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패사건에 관한 수사권 보유	공직자의 불법 행위, 공공계약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가능(단, 형사사건은 검찰청 이첩)	조사권 보유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대상 조사 가능)

2. 감사원 등 국내조사기관에 대한 조사권 부여 현황

기 관	주 요 기 능	조사권 부여 현황
공정위	◦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규제	◦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 ◦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및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
국세청	◦ 국가재정 확보	◦ 질문,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요구
선관위	◦ 공명선거 실시	◦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 및 관계서류 등 자료의 제출 요구 ◦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요구
인권위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에 대한 교육·홍보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자료 등의 제출요구 ◦ 조사와 관련한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등에 대한조사 관련 사실·정보에 대한 조회 ◦ 질문·검사권
감사원	◦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감찰	◦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검사 ◦ 직무감찰, 관계자 등의 출석요구 ◦ 관계물품 등의 제출 요구 ◦ 창고·금고·문서·장부·물품 등의 봉인 ◦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제출 요구

